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환수금액, 제재부가금, 가산금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(안 제8조의2 신설)

가. 개정이유

-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

나. 개정내용

- 환수금액, 제재부가금, 가산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
- 분할납부 가능 금액, 분할납부 신청, 분할납부 최대 횟수 및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 등 세부 사항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납부 의지가 있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부 부담 완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